

1.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조약, 국제 관습법의 정의’ 체크해봅시다.

두 가지를 모두 서술했던 건 우리가 저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의 가능성도 있기에 차이를 잘 정리하셔야 해요. 차이가 뭐죠?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했는가?’이겠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나올 어떤 국제법에 대해 명시적 합의의 여부에 따라

조약인지 국제 관습법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가 앞으로 지문에 등장하겠군요 ㅎㅎ

2.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전의 두 국제법(조약, 국제관습법)과는 달리 경제 관련 국제기구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네요.. 단순 국제기구의 결정이지 법이 아닌가 봅니다.

뭔가 어떤 경제 관련 국제기구가 나올 떡밥을 던지고 있고, 우리는 경제가 흑시

나올까 하는 생각에 벌벌 떨며 기다리면 됩니다..! ㅎㅎ

3.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오, 우리가 앞서 봤던 일반적 상황과는 다르네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는데

왜 준수될까요..? 이를 규범적 성격이라고 지칭하네요.

4.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법적 구속력 = 위반에 대한 제재, 그런데 BIS 비율 규제라는 독특한 친구는 저러한 법적 구속력 없이도 국제법만큼 효력을 지닌다는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닌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이라.

어떤 '신뢰'일까 궁금해집니다!

-----1문단-----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우리의 목적은 규범적 성격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이해하기..!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 '신뢰의 구속력' 것이다.

항상 문단 별로 읽고 자신이 무엇을 읽었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특히 도입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

읽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준다는 점 잊지 말자구요..!

정리해봅시다.

'일반적인 국제법과는 다르게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닌 신뢰로 구속력을 형성하는

BIS 규제가 어떻게 신뢰로 다른 나라들이 지킬 수밖에 없는 구속력을 행사하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이 지문의 관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번 읽어보자구요.

5.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BIS 비율 규제 내용이 나옵니다. BIS 비율 규제 내용은 최소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함으로써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모두 보호하는 것이군요..!

특정 사회 정책의 목적이 나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 정책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정책이잖아요!!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6.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text{BIS 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geq 8(\%)$$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후순위채무의 합으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위험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조금 길게 끊었습니다.

우선 바젤위원회라는 경제적 국제기구가 나왔네요(도입부의 떡밥대로)!

그리고 드디어 BIS 비율이 나오는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5.문장의 BIS 비율의 내용을 봐볼까요?

BIS 비율: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
오히려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한다더니

6.에 나온 식에 따르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이었네요.

그리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 자기자본 비율 \propto 재무 건전성?

혹은 반비례일 수도 있겠지만, 둘이 상관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정의들이 쏟아지네요. 밑줄이나 < >로 체크해 놓읍시다..!

* 자기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단기후순위채무

* 위험가중자산 = 신용위험 \times 위험가중치(국채 - 0%, 회사채 - 100%)

7. 이후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아 아까 체크한 정의에서는 오직 '신용위험'만 있었는데,

이제는 '시장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네요.

금융 자산이 가격 변동하기 때문이라니까, 말 그대로 시장에서 가격이 변하는 것을 고려한 요소인가 봅니다.

그래서 시장 위험도 BIS 비율에 합으로 넣었군요.

8.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대신 시장 위험은 신용 위험처럼 고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감독 기관의 승인이 있으면 선택적으로 된다는 것은 시장에서 가격이 변동할 때마다

재각재각 반영이 가능할 거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걸 바젤 I 협약이라 한답니다.

-----2문단-----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text{BIS 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geq 8(\%)$$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이후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I'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BIS 비율 등장!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오므로, 모두 < >로 정의 체크.

'획일적으로'

->'강력한 단어'는 언제나 조심

달리; 차이점 확인

2문단도 한 번 정리해볼까요?

1문단에서 말했던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을 이용한 BIS 비율 규제가 등장했네요.

근데 뭔가 그냥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1. 그냥 밀줄 치고 간다.
2. 이해할 때까지 어떻게든 본다.

이런 지문은 당연히 몇 번일까요? 정답은 뒤에서 공개하겠습니다..!

9.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II' 협약이 도입되었다.

바젤 I 협약의 한계..? 한계가 무엇인지, 어떻게 바젤 II에서 극복했는지 봅시다..!

10.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위험 가중치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했었죠?

국채냐 회사채냐 유형만 나뉘었는데, '신용도'라는 걸 고려한답니다. 으음 뭘까요..

11.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이제 신용도가 뭔지 아시겠죠? 우선 두 가지 중 표준 모형만 정리해봅시다.

처음 BIS 비율 규제에서는 '획일적으로' 부여했다고 했었는데,

획일적->세부적으로 바꿨네요. 범위만 정해두고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따로

계산하겠다는 거군요. 확실히 더 자세해졌네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국채를 동일하게?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 회사채를 동일?

이런 문제점을 해결한 거 같습니다. 바젤 I 보다 진화한 바젤 II 네요!!!

12.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 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이 ⑥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이번에는 내부 모형에 대해 자기 자본의 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게 했네요. 표준 모형처럼 유동적으로 바꿨군요!

13. 최근에는 ‘바젤Ⅲ’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채무가 제외되었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바젤Ⅲ에서 자기자본의 일부였던 단기후순위채무를 없앴고,

자기자본중에서도 기본자본에 대해 특별히 최소 6%라는 것을 추가하면서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했다고 하니,

‘자기자본 손실 복원력 ∝ 기본 자본’까지 알 수 있네요.

14.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던 내용이네요~

-----4문단-----

우리의 예측대로 글이 흘러간다는 걸 마지막 문장으로 확인할 수 있던 문단입니다. 역시 짧은 문단이고 글로 내용이 정리되니 사진은 생략하겠습니다.

15.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 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 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도입부의 내용이 드디어 나오군요... 수많은 국가가 28개국, 이상한데요?

라고 생각하면 안되죠. 우리가 도입부에서 읽은 내용을 적용합니다.

정말 가입한 나라만 바젤 협약을 지킬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BIS 비율 규제를 살펴보고 있던 이유는

‘제재가 아닌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을 보기 위해서였잖아요.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설령 가입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왜 수많은 나라들이

바젤 협약을 채택해서 제도화할까요? 이 질문의 답이 ‘신뢰가 무엇이냐’겠네요.

도입부를 잊지 않고 뒷부분에서도 계속 써먹는 게 포인트입니다..!

16.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방금 말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네요.

17.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던 것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 받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건 뭐.. 사실 위반에 대한 제재나 다름없어 보이긴 한데, 어찌 됐건 간에

재무 건전성이라는 ‘신뢰’ 덕에 바젤 협약이 법적 구속력 없이도

수많은 나라들이 따를 정도의 영향력을 전 세계에 끼치게 된 건가 봅니다.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 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 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던 것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③ 받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가입 전부터 사용? ∴ ‘신뢰’

신뢰 = 재무 건전성

5문단은 잊을 뻔했던 도입부인 1문단을 다시 지문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린 BIS 비율 규제가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국제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아닌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을 이해하기 위해

단지 하나의 예시로 가져왔던 소재가 BIS 비율 규제였던 겁니다.

절대 우리가 이 글의 목적으로 여긴, 중요한 게 뭔지 잊으시면 안 돼요!

이제 뒷 내용은 1문단 도입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일겁니다.

즉, 1문단이 잘 잡혀있는 사람은 이미 이해해버린 내용일 거예요..

사실 지문 해설을 여기까지 읽으신 여러분도 이제 뒷 내용이 상상가실 겁니다..!

18.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가입한 회원국들에게는 자국에 바젤 기준을 도입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당연한 내용이겠고요.

19.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아무리 의무를 부과해도 사실 안 따르면 그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따른다는 내용. 계속 반복되고 있죠. 왜? 중요하니까요.

20.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㉕ 말랑말랑한 법(softlaw)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이렇게 앞에서 예측한대로 뒤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진술을 내용 파악이 아닌, 예측 검증이 사용할 때 새로운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21. 이때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hard law)이라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㉖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도입부에서 예고했던대로,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 같은 국제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신뢰를 통해 구속력을 형성하는 사례로 BIS 비율 규제를 소개했던 지문이네요..!

-----6문단-----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㉕ 말랑말랑한 법(soft law)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이때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hard law)이라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㉖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지겹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도입부에서 나온대로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

기억하고 바로 문제 들어가봅시다!

어차피 평가원 문제의 정답선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잊지 마세요! :)

37.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흐음 그냥 해봅시다. 전개가 어떻게 됐죠?

BIS 비율 규제를 통해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을 설명하지 않았나요?

잊으셨을까봐 써놓지만,

분명히 도입부에서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 규범성'임을 확인했었습니다!

[국제적 기준--> BIS 비율 규제 / 계속 변함]

- ①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내용과 그 변화 양상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다. **규범성->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딱!**
- ② 특정한 국제적 기준이 제정된 원인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의 규범을 감독 권한의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③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필요성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수용 되는 규범의 필요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논증하고 있다.
- ④ 특정한 국제적 기준과 관련된 국내법의 특징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규범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⑤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설정 주체가 바뀐 사례를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서 규범 설정 주체가 지닌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38.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냥 중요한 거 고릅시다.

- ①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 바젤 협약에서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 ③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제일 중요하게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이니까....**
- ④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자국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결국, 이 지문의 내용은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즉, '말랑말랑한 법'이었잖아요..

39. **BIS 비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기준을 떠올립시다. 점점 세세하게!!

- ① 바젤 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신용도 \square 위험가중치; 분모..! 높아지네요.**
- ②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 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 **신용도만 추가됐죠! II에서요!**
- ③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BIS 비율은 항상 높아진다. **잉, 신용도 고려한다니까요...**
- ④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내부 모형..?!**
- ⑤ 바젤 III 협약에 따르면,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완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 보완된 BIS 비율 규제를 은행이 준수할 수 있다. **기본자본이 6%이상**

말만 1, 2, 3 다 있지, 결국 하나만 건드렸죠?

바젤 II --> 신뢰도 추가 & 내부 모형 추가. 이 내용으로 결국 끝나버렸네요...

40.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사례 적용 문제; 차근차근 이해한 걸 시키는대로 하면 됩니다.

<보 기>

갑 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은 아래 표와 같다. 갑 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했으며, 바젤 II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여 공시하였다.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이다. 그 이외의 자본 및 자산은 모두 무시한다.

항목	자기자본		
	기본자본	보완자본	단기후순위채무
금액	50억 원	20억 원	40억 원
항목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시장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국채	회사채	
금액	300억 원	300억 원	400억 원

바젤 II 표준 모형
회사채-> 50%

가중치 이미 반영...!

- ① 갑 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겠군. $(50+20+40)/(300+300+400) \times 100 = 11(\%) > 8\%$
- ② 갑 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50->20% 분모가 작아지네요. 비율 증가!

- ③ 갑 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더 컸는데 가중치 곱하니 같아졌으므로 가중치는 더 낮아진 것이겠죠?

- ④ 갑 은행이 바젤 I 협약의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자산을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 원이 되겠군.

국채 0%, 회사채 100%가 바젤 I 그럼 국채 300->0, 회사채 300->600 맞네요!

- ⑤ 갑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면 바젤 III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군.

보완자본에서 빼한테요?? 분명 기준은 기본 자본에 대한 거였는데..

현재 기본자본은 $50/(300+300+400) \times 100 = 5(\%) < 6\%$ 아이고 역시나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만약 이해를 안 하고 그냥 확확 넘어갔다면..?

저 문제를 보고 그제서야 이해하러 가면 늦을 겁니다.

빠르게 정리해야 되는 지문도 맥락에 따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함을 기억합시다..!

41.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ㄱ: 말랑말랑한 법 -> 주제!!!

- ① 바젤위원회가 국제 금융 현실에 맞지 않게 된 바젤 기준을 개정한다.
- ② 바젤위원회가 가입 회원이 없는 국가에 바젤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한다.
- ③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준수 의무가 있는 바젤 기준을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다.
- ④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강제성이 없는 바젤 기준에 대하여 준수 의무를 이행한다.
- ⑤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에서 바젤 기준을 제도화하여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가입도 안 했는데, 오히려 제도화하는..말랑말랑

이런 문제 풀 때 팁은 지문에 정답이 되는 상황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가입 전 대한민국 --> 법제화는 함 = 5번의 상황과 동일하네요 ㅎㅎ

42.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 ② ㉡: 8%가 넘도록
- ③ ㉢: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C: 발을 들이지-> 신뢰를 못 얻을 시의 문제
- ④ ㉣: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라는 바젤 위원회 가입과는 아무 상관없죠
- ⑤ ㉤: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될지

방금 5번 문제에서 봤다시피 이 지문의 핵심은

'가입도 안 했는데 법제화 ;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그러니 계속 이것만 답이죠..!